

『철도 운송 위험물 취급자 안전교육 교재 등 개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4. 07.

국 토 교 통 부
철도안전정책관

【 목 차 】

I . 과업 개요	1
II .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III . 과업지시(제안요청)서	4
IV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7
V . 평가방법 및 기준	20
<제안관련 서식>	23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위험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험물 취급자 안전 교육 의무를 부여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 하위 법령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여 위험물 취급자교육을 시행토록 규정
-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 규정한 교육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교재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함

2. 과업범위 및 기간

- 시간적 범위
 - 사례 및 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현황 및 통계는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 국내 철도운영기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연구기관, 기타 철도관련 기관(협회, 학회 등) 및 항공, 해운 등의 안전교육 교재·콘텐츠 및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해외 사례)
- 내용적 범위
 - 정부, 한국철도공사, 철도 관련 기관·단체의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 가능
 - 본 연구는 아래에 제시한 세부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협상 결과 및 연구 수행 중 추가로 논의하여 정한 사항을 포함

○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0일

3. 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Ⅱ.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 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비영리 법인 해당 없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따름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

Ⅲ. 과업지시서

1. 과업내용

- 위험물 취급 종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6의 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교육 교재 개발 필요
- 교육대상자별 기획의도를 고려한 교재개발 추진방향을 기획하고 철도 및 위험물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집필진 구성·운영
- 교재내용 및 원고에 대한 교정·편집을 통해 가독성이 높은 교재를 작성하고 편집 오류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필요
- 삽입된 그림, 표,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등 작업과 글자체, 크기, 이미지 구성 등 전달성과 명확성 높은 디자인 적용
- 교재 개발 범위에 따른 교과목별 세부내용 구성 및 원고관리(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표절, 무단복제 관련), 추진일정 등 사업관리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6 교육과목

교육 과목	교육내용	과정 수
가. 위험물취급 제도	• 위험물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2
나. 위험물의 분류	• 위험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1
다. 위험물취급 일반	•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요건	1
	• 위험물 용기 및 포장의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사항	2
	•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위탁 절차	2
	• 위험물 표시 및 표찰	1
	•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1
라. 위험물취급 실무	• 위험물 적재 및 격리	1
	• 위험물 포장·운송	1
마. 사고 예방 및 대처	• 위험물 사고 시 안전조치 방법	2
	• 화재예방조치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 1개 과정 별 30분 이상 콘텐츠 마련 필요

-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의 특성상 현장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국내 출간된 유사교육 관련 교재 및 콘텐츠 사례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의견 및 방향 제시

2. 일반사항

○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본 과업지시서의 “발주기관” 이라 함은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를 말하며, “용역기관” 이라 함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기관)을 말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은 “철도안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제반 관계법령, 정부의 각종 규정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를 조사·검토하되, 가급적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과 자료출처 및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종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용역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철도운영기관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 과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본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용역기관은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용역기관이 져야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사업비 산정 및 편익의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사업비 산정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감독자가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용역기관은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용언어, 단위 및 용어해석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용어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국어가 우선한다.

- 본 과업수행 상 사용되는 단위는 meter, kg, hour 등 법적 계량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과업착수와 관련한 제출물

- 용역 착수계 및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과업참여자 명단

- 1) 용역기관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를 담당과업 분야별로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 및 조직 편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자격증사본, 개인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1) 용역기관은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계획서는 용역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용역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

-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되는 기술자는 종전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용역기관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필요할 경우, 과업별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용역에 입찰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과업수행 관련 책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이중 최대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주관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 어느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업체는 동 과업에 입찰하는 타 공동수급체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2)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3)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기관은 용역기관을 계약위반 행위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용역기관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실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고사항

○ 착수보고

용역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 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매월 말일 기준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지시된 사항의 과업 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완료예정일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검토 내용이나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개최 전 자문위원, 자문안건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용역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실 임차료 등 제반 비용은 용역기관이 부담한다.

4. 계약 금액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기관이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경비항목 중 여비, 인쇄비, 회의비(자문비 포함) 등 직접 경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장점검 및 발주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위한 여비와 인쇄비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용역기관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 및 향후 사용 계획을 준공 예정일 10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6.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명확인이 있어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용역기관은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재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요약본 각 5부
- 교재 인쇄본 5부(컬러인쇄)
- 교재 및 콘텐츠(영상 등) 산출물 일체, 최종보고서 등이 포함된 usb 1개

7. 기타사항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기관이 제3자가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기관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역기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 용역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과업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으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용역기관이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과업 책임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결과 등은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한다.
-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품은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9. 예정공정표

구 분 \ 기 간	1M				2M				3M				4M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계약 및 착수보고																
교재개발																
컨텐츠 개발																
중간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및 준공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다.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서(요약서 포함)는 A4용지 및 한글(hwp)로 작성 하며,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
- 2)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별도 용어를 설명하여야 함
- 3)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 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4)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하여야 함
- 5)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6)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덧붙임 하여 작성하여야 함
- 7) 제안서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임
- 8) 제안서는 A4용지 20매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9) 참여기간,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10) 제안서 작성 시 일반 원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를 것

나. 기타사항

- 1) 발주청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 계약자가 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협상 적격 차순위자와 재협상을 시행함
- 2)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3)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5) 필요시 입찰 참가기관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6)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함
- 7)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8)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9)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890)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V.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술능력평가(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가방법
일반 현황 (20)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철도 또는 교통 분야 등 연구 용역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력	20	계량
과업 수행 (80)	이 해 도	○ 제안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이해도	20	비계량
	사업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적정성 (추진일정, 인력배분 등) ○ 연구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도출의 적정성	30	비계량
	상호협력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T/F 등) 구성, 운영 및 관계기관 의견 적용 방안	20	비계량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지원방안 적정성	10	비계량
계			100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 참여인력(20점) : 본 과제에 참여할 인력 현황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10점 × 참여인력수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20점을 초과할 경우 20점으로 배점
선임연구원	8점 × 참여인력수	
연구원	5점 × 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3점 × 참여인력수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등 단체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 선임연구원 3년 이상	○ 선임연구원 또는 기술원 3년 이하	○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연구 계획	이 해 도	20	20	16	12	8	4
	사업수행계획	30	30	24	18	12	6
	상호협력	20	20	16	12	8	4
	사후관리	10	10	8	6	4	2

라. 평가방법

- 1) 점수계산은 소수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로 함
- 2)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공고일로 함
- 3)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 산정

1)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times$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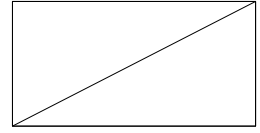
※ 채점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사사오입(반올림) 함

2) 내용평가 득점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함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름

<서식 제1호>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철도 운송 위험물 취급자 안전교육 교재 등 개발 연구

기관(업체)명 : (인)

<서식 제2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3호>

관련 연구인력 보유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서식 제4호>

참여 인력의 자격(학력) 및 경력(총괄표)

연번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위	학위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참여율 (%)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5호>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학 위)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수행연구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 주 처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본 작업에 직접·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